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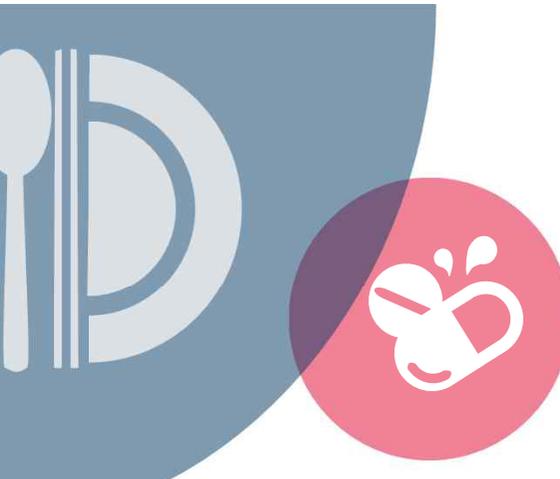
# 수입식품 규제혁신 성과 및 3.0 과제

2024.5.21. ~ 2024.5.24.



식품의약품안전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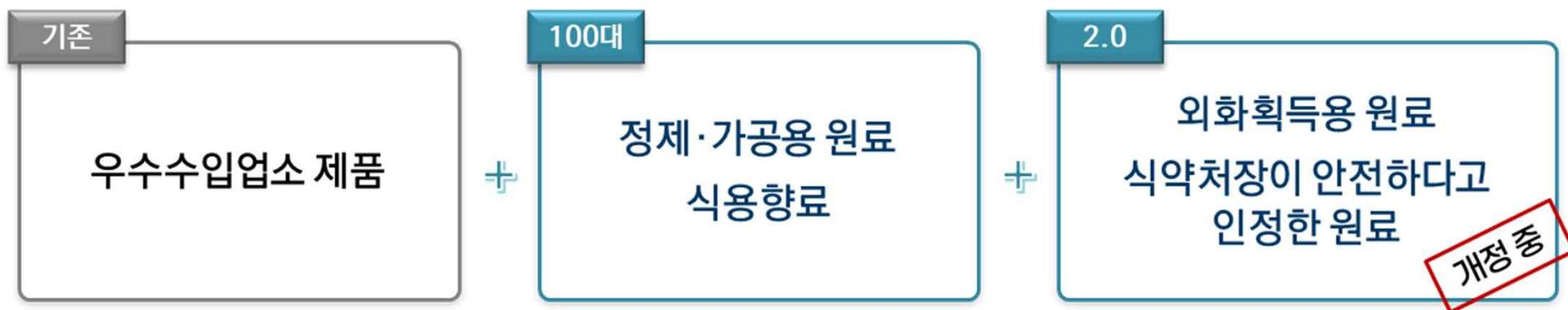


# 1. 수입식품 규제혁신 주요 성과



# 수입식품의 신속통관 지원

##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 확대



안전성이 확인된 제조용 원료의 신속통관을 허용하여 통관 소요시간 단축, 물류비용 절감 등  
**원활한 원료 수급 및 물가안정 지원**

# 수입식품의 신속통관 지원

## 수입 축산물 검사기간 단축

### 기존

- ▣ 정밀검사: 18일
- ▣ 무작위표본검사: 18일



### 개선

- ▣ 정밀검사: 14일  
\* 가온보존시험대상 15일
- ▣ 무작위표본검사: 14일  
\* 조제유류를 제외한 냉장보관 축산물 7일  
(리스테리아 및 다이옥신 검사대상 10일)  
\* 가온보존시험대상 15일

개정 중

시험분석 장비 및 시험기법 고도화로 **수입축산물 검사 처리기한 단축**

# 규제외교를 통한 K-푸드 수출 저변 확대

## 식품 수출지원 인프라 구축

### 기존

- ▣ 제외국 수입요건 등 비관세장벽이 강화됨에 따라 규제 해소를 위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수출 안전규제 지원이 요구



### 개선

- ▣ 수입규제 대응 체계 강화, 수출 상대국 규제당국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추진, 수출 안전규제 지원 인프라 정비 등을 통한 수출 활성화

규제당국과 적극적인 위생협상 및 업체 기술지원으로 K-푸드 수출 활성화

# 규제외교를 통한 K-푸드 수출 저변 확대

EU 

열처리 가금육(삼계탕 등) 제품  
신규 수출 개시('24.5월)

중국 

조제분유 배합비 등록 심사  
대행('23.2월) 및 유제품·삼계탕  
수출업소 등록 갱신('23.8월)

캐나다 

쇠고기 소량함유 식품(육수,  
조미료 등) 수출 재개('23.4월)

미국 

가금육제품 수출 자격 유지  
및 돈육제품 신규 수출허용  
현지실사 대응('23.11월)

말레이시아 

할랄 인증 받은 쇠고기  
수출 개시('23.5월)

인도네시아·태국·베트남

유제품 수출 등 업계 대상  
안내서(5종) 발간('23)

중남미(8개국)

수출입식품 안전관리 역량  
강화(ODA) 실시('23.10월)

# 디지털 기반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

## 인공지능 위험예측 기반 수입식품 통관검사 시행

### 기존

- ▣ 통계 기반 분석으로 통관단계 무작위 검사 대상 선정
  - ▶ 식품, 축산물, 수산물 분류의 통계기반 위해도 분석 모델



### 개선

- ▣ 최근 5년 수입식품 데이터(약 380만건)를 학습한 통계 + 인공지능 기반 예측 분석을 통해 고위험 품목을 선정하여 검사
  - ▶ 농·임산물, 가공식품 등 수입제품군별 위해요소 특성을 반영한 고위험 식품 예측모델

인공지능으로 고위험 식품을 선별, 검사하는 안전관리 체계로 **국민 먹거리 안전 강화**

# 영업자 편의성 제고 및 부담 경감

## 수입식품 전자영업등록증 도입

### 기존

- ▣ 영업등록증을 영업소 안에 비치
- ▣ 민원(변경, 지위승계, 폐업) 신청 시  
영업등록증 원본을 제출(방문, 우편 등)



### 개선

- ▣ 영업장 내 영업등록증 비치 의무 삭제
- ▣ 상시 조회·출력 및 원본 제출 없이 바로  
민원 신청 가능

민원 신청 관련 **영업자 편의성 제고 및 부담 완화**  
종이서류 발급·사용에 따른 자원·비용 경감으로 **탄소 중립에 기여**

# 영업자 편의성 제고 및 부담 경감

## 신고대행업 시설기준 완화

### 기존

-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함
  - ▶ 수입·판매업, 인터넷 구매대행업으로서 전자상거래·통신판매 형태의 경우 주택 용도의 건축물 사용 가능



### 개선

- 전자상거래 형태로 신고대행업 영업을 하여 구매자가 직접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는 경우 주택 용도 건축물 사용 가능

신고대행업 시설기준 완화로 **영업자 시설 비용부담 경감**

# 영업자 편의성 제고 및 부담 경감

## 수출식품등 영문증명서 구비서류 인정범위 확대

### 기존

- 위생증명서 등 신청 시 수출신고필증(관세청 발급)을 첨부해야 하고, 분석증명서 신청 시 시험검사성적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함
- 전산발급 영문증명서는 압인이 없어 수출상대국에서 진본 미인정 사례 발생 및 신청 건당 1부만 발급 가능

### 개선

- 수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선하증권등) 및 인터넷 등으로 원본임을 확인 가능한 시험검사성적서 사본을 제출서류로 인정
- 전산발급 시 바코드 도입하고 진위여부 확인방법기재 및 부분 발급기능 추가

영문증명서의 신속한 발급으로 수출지원 및 진본 미인정으로 인한 통관 어려움 해소

# 영업자 편의성 제고 및 부담 경감

## 수입 원재료의 용도변경 허용 범위 확대

### 기존

- ▣ (대상) 자사제조용 원료
- ▣ (신청주체) 제조업체로 한정
  - \* 식품제조·가공업, 식품첨가물제조업, 용기·포장류제조업, 축산물가공업, 식육포장처리업



### 개선

- ▣ (대상) 자사제조용 + 외화획득용 원료
- ▣ (신청주체) 자사제조용 원료를 수입하는 모든 영업자
  - \*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, 유통전문판매업자 추가

개정 중

원료 수급·활용 유연화로 산업계의 **경제적 부담 경감** 및  
자원재활용으로 순환경제에 기여



혁신의 길 미래를 연다

## 2. 수입식품 분야 **규제혁신 3.0** 과제



# 수입식품의 부적합 이력 관리 기간을 설정하겠습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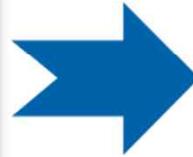
## 현행

- 부적합 이력이 있는 제품은 정밀검사를 5회 모두 실시할 때까지 기한 없이 적용

“

10년 전과 지금은 제조회경도, 기술여건도 많이 바뀌었는데, 그 때 부적합 받은 제품이 5회까지 정밀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수입하는 제품을 정밀검사 받으라는 것은 너무 부당해요

”



## 개선방안

- 부적합 이력이 있는 제품의 5회 연속 정밀검사 적용기간을 5년\*으로 한정  
\* 일반 수입식품의 안전성 재확인 주기

수입식품 안전성 재확인 주기와 부적합 정밀검사 적용 주기를 일치시켜  
안전관리 형평성 도모 및 영업자 불만 해소

# 해외 현지 안전관리에 노력하는 영업자에게 주는 혜택을 확대합니다

## 현행

- 해외제조업소를 자체 관리(위생점검 연1회) 하는 영업자(우수수입업소)에게 통관 시 혜택을 부여 ('09~)

“  
매년 해외제조업소 위생점검을 해야 하는데 들이는 시간과 비용에 비해 혜택이 적어요  
우수수입업소 혜택을 확대해주세요  
”



## 개선방안

- 행정처분 및 부적합 이력 등 영업자의 안전관리 기여도\*를 고려하여 행정처분 경감 규정 마련
    - 우수수입업소 취소 기준(영업정지 2개월 이상)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
- \* (예)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고 수입한 우수수입업소 제품에 부적합이 없는 경우 한정

안전관리 책임과 혜택을 연계, **자율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영업환경**을 조성하여  
사전 안전관리된 식품 수입 증가

# 국내 상표를 부착한 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의 숙원을 해결하겠습니다 (1)

## 현행

- OEM 수입식품등 수입 영업자는 ① 해외 제조업소 현지 위생평가 및 ② OEM수입 식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실시

“

제조환경공정이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 
기구류의 현지 위생평가가 부담돼요

”



## 개선방안

- 기구·용기·포장의 현지 위생평가 주기 연장(2년 → 3년)  
\* (중장기)기구·용기·포장 현지 위생평가 제외 검토
- 평가결과가 우수하여 연장된 위생평가 기간(1년)에 실시하는 자체 위생평가를 해외제조업소에서도 실시 가능

OEM 제도 합리화로 영업자의 **시간적·경제적 부담 완화** 및  
OEM식품 수입 증가에 따른 보다 안전한 수입식품 소비환경 조성

# 국내 상표를 부착한 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의 숙원을 해결하겠습니다 (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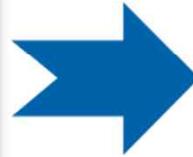
## 현행

- OEM 수입식품등 수입 영업자는 ① 해외 제조업소 현지 위생평가 및 ② OEM수입 식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실시

“

무작위표본검사로 안전성을 확인한 제품까지  
자가품질검사를 하는 것은 불합리해요

”



## 개선방안

- 자가품질검사 주기 내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은 경우 자가품질검사 의무 면제
- 식약처 지정 국외 시험·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검사도 자가품질검사로 인정

OEM 제도 합리화로 영업자의 **시간적·경제적 부담 완화** 및  
OEM식품 수입 증가에 따른 보다 안전한 수입식품 소비환경 조성

# 축산물 원료를 다른 제조업소에 판매하는 요건을 완화합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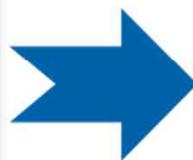
## 현행

- 자사제조용으로 수입한 원료 용도변경 시 시험·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
  -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은 경우 면제

“

최초정밀검사는 무작위보다 더 많은 항목을 검사하는데도 성적서가 면제되지 않아 불합리해요

”



## 개선방안

- 자사제조용 축산물 원료 용도변경 신청 시 최초정밀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시험·검사 성적서 제출을 면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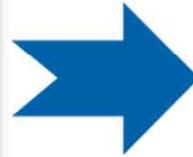
안전성을 이미 확인한 수입원료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성적서 제출 면제로  
영업자의 검사 비용·시간 부담 해소

# 글로벌 공급망 악화에 대비, 수입식품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마련합니다 (1)

## 현행

- 식품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신청 사유를 해당원료를 수입한 수입자의 폐업, 파산, 해당 원료 사용중단 등으로 제한

“전쟁 등 물류대란으로 식품 원료 수급이 지연되면 생산에 차질이 발생해요. 원료를 신속히 수입하고, 다른 제조사 원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.”



## 개선방안

- 원료 수급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다른 제조·가공업체의 원료를 구매·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제조용 원료의 용도 변경에 대한 특례규정 마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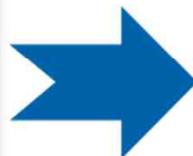
대내·외 리스크 상황에서도 **원활한 원료 수급·제품 생산**이 가능해져  
소비자 불편 최소화 및 물가 안정에 기여

# 글로벌 공급망 악화에 대비, 수입식품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마련합니다 (2)

## 현행

- ❑ 축산물 해외작업장 등록 시 현지실사가 원칙이나, 물가조절 등 사유로 수입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서류심사를 통해 등록 가능

“전쟁 등 물류대란으로 식품 원료 수급이 지연되면 생산에 차질이 발생해요. 원료를 신속히 수입하고, 다른 제조사 원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”



## 개선방안

- ❑ 국내·외가축전염병, 국제 정세변화 등 발생으로 수입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도 축산물 해외작업장 등록을 위한 현지실사를 서류심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

대내·외 리스크 상황에서도 **원활한 원료 수급·제품 생산**이 가능해져  
소비자 불편 최소화 및 물가 안정에 기여

# 수입 축·수산물 안전과 신선도 향상을 위한 전자위생증명을 확대합니다

## 현행

- 축·수산물 수입신고 시 영업자는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위생증명서를 제출
  - 국가 간 협의가 완료되어 시스템 구축 시 전자위생증명서로 대체

“

빠르고 편리한 전자위생증명을 더 많은 국가에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

”



## 개선방안

- 축·수산물 검사·검역 기관 간 전자위생 증명 데이터 공동활용 추진
- 전자위생증명 적용국가 확대
  - \* 축산물: 3 → 5개국(+브라질, 뉴질랜드)
  - \* 수산물: 3 → 5개국(+러시아, 태국)

종이증명서 도착 지연 등 현장애로 해소 및 원본 제출에 소요되는 시간·비용 절감  
탄소중립 실천 및 기관 간 데이터 공동활용으로 시스템 구축 비용 절감

**국민 안전이 기준입니다**  
YOUR SAFETY IS OUR STANDARD



식품의약품안전처